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. 11. 14 선고 2018가단140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128,376m²에 관하여 2016. 11. 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주은영

별지